



**부정행위 사례**

- ▶ 참고 서적, 메모, 인쇄물 등 **부정한 자료를 소지**하거나 휴대 전화, 스마트워치 등 **부정한 수단을 이용한**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.
  - ▶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**보거나** 본인의 답안지를 **보여 주는 경우** 또는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에 관하여 **다른 사람과 의사소통**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.
- ※ 앞으로는 시험 중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**단순 소지 행위**, 시험관리관의 **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**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.

**사례 1** 시험시간에 **휴대 전화에 저장된 시험 관련 자료를 확인**하고 인터넷을 통해 **시험내용을 검색**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  
▶ 해당 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

**사례 2** 시험시간에 **소형 메모지에 시험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커닝페이퍼로 사용**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  
▶ 해당 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

**사례 3** 시험시간에 **스마트폰인 휴대 전화를 전원을 켜 채 문제지 아래에 숨기고 있던** 중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감독관의 즉시 제출 및 내용 확인 요청에 불응  
▶ 해당 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

**사례 4** 시험시간에 **옆자리 수험생의 답안을 커닝**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  
▶ 해당 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



## 응시자준수사항 위반 사례

- ▶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▶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 라벨을 손상하거나 문제지를 들추어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점처리됩니다.
- ▶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점처리됩니다.

**사례5** 시험 시작 5분 전 문제지가 시험실로 반입되고 난 후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수험생이 뒤늦게 시험실로 입실

- ▶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결시 처리
- 

**사례6** 시험 시작 전 무의식적으로 문제지를 들추어봄

- ▶ 해당 시험 영점처리
- 

**사례7**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,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계속 작성

- ▶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 시험 영점처리
-